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노식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49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2일

발 의 자 : 노식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고병국·김기덕·김정태
김제리·김호진·김호평
박상구·박순규·양민규
우형찬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, 법률전문가의 자문수요 및 내용 역시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, 특히 시정 분야별 입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대응이 필요한 상황임
- 이에 입법·법률고문의 자문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- 점차 다양해지는 법률적 자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촉자격의 범위를 확대함(안 제4조제1항제1호 개정).

- 고문료 중 법률자문료 규정을 기존 1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(안 제9조제2항제2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”을 “대한변호사협회에 등
록한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 중 “20만원”을 “3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
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위촉) ① <u>입법·법률고문</u>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<u>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</u>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② ③ (생략)</p>	<p>제4조(위촉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</u>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고문료·회의비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고문료는 정액고문료와 법률자문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(부가가치세 미포함)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법률자문료 : 1건당 <u>20만원</u></p> <p>③ ④ (생략)</p>	<p>제9조(고문료·회의비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30만원</u></p> <p>③ ④ (현행과 같음)</p>

○ 월정수당 ≒ 97,500천원

- 5년간 월정수당 = $\sum_{i=1}^5$ (연간비용)_i

i = 비용추계 연차(2021년 ~ 2025년)

- 연간비용 ≒ 100천원(법률자문료 인상분) × 65건(최근 3년 평균 법률자문의뢰 건수) × 3명
(건당 법률자문인 수) = 19,500천원

<법률자문료 변경 내용>

구 분	지 급 액 (1건당)		
	개정 전	개정 후	증감
법률자문료	200천원	300천원	100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정한섭

주 무 관 김민호

☎ 02-2180-7932

e-mail : waterkim@seoul.go.kr